

화 회 산 업 발 전 및 화 회 문 화 진 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안

1. 의결주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473호, 2019.8.20. 공포, 2020.8.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 제2조에 따른 화훼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도의 화훼산업육성 시행계획 수립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3조)

다. 법 제7조에 따른 화훼산업 실태조사 주기, 방법, 범위 등을 구체화함(안 제4조)

(1)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2)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화훼류 품목별 재배현황·시설현황, 화훼재배 농가 경영실태 조사, 화훼 유통·판매·소비 현황, 화훼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현황, 화훼류 수출입 현황 등을 포함함

(3)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를 구체화하고, 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함

라. 법 제9조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 신청·지정절차 등

을 정함(안 제5조)

마. 법 제11조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 업무범위 및 지정취소 기준 등을 구체화함(안 제6조)

바. 법 제14조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을 구체화함(안 제7조)

(1) 재사용 화환 제작·판매 시 ‘재사용 화환’의 표시, 판매업체명, 연락처 등을 표시하도록 함

(2) 재사용 화환 표시는 화환 앞면, 인터넷 및 방송 광고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함

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를 위해 농식품부, 시·도지사는 매년 조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함(안 제8조)

아. 재사용 화환 표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자. 법 제18조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 각각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1)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등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함

(2) 화훼 관련 교육훈련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차.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1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5. 8. ~ 6. 18.)

2) 재입법예고(2020. 7. 3 ~ 7. 23.)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훼의 범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절화류 : 꽃·줄기·잎 등을 잘라 이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식물
2. 관엽류(난류 제외) : 잎의 모양이나 빛깔, 무늬 등을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3. 난류 : 관상용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난초과의 식물
4. 초화류 : 화단이나 화분에 심어 이용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꽃이 피는 종류의 풀
5. 화목류 : 꽃을 관상하기 위해 조경용이나 분화용으로 재배하는 나무
6. 관상수류 : 잎과 나무형태(수형)를 관상하기 위해 조경용으로 재배하는 나무
7. 구근류 : 종구(둥근 모양의 땅속줄기나 뿌리)를 이용하기 위해 재

배하는 식물

8. 종자류 : 종자의 판매 또는 자급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식물

9. 그 밖에 관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식물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화훼산업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주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훼류 품목별 재배현황 및 시설현황

2. 화훼재배 농가 경영실태 조사

3. 화훼 유통·판매·소비 현황

4. 화훼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현황

5. 화훼류 수출입 현황

6. 그 밖에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화훼류 품목별 재배현황 및 시설현

황, 제1항제5호에 따른 화훼류 수출입 현황은 매년 실시

2. 수시조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전문 연구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2. 법 제7조에 따른 화훼산업 실태조사 결과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화훼공판장의 경매·유통정보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한다.

제5조(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화훼를 생산·유통·판매하는 시설면적이 30헥타르(ha) 이상일 것
2. 진흥지역 지정 시 지역의 화훼산업 발전 효과
3. 진흥지역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지역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지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화훼산업 진흥계획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진흥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진흥지역 내 화훼 농가, 유통·판매시설 현황
3. 진흥지역 육성 방안 및 세부사업계획
4. 진흥지역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업내용 및 재원조달 계획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지역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련 전문가 의견, 지정신청서와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지역 지정하거나 지정해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업무범위 등) ① 법 제11

조제1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훼 생활화 및 화훼 이용의 촉진 지원
2. 화훼 활용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보급 지원
3.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화훼 활용 교육 지원
4. 화훼 생활화·이용 등 관련 조직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5. 그 밖에 화훼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사용 화환”의 표시
2. 판매업체명 및 연락처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가 인터넷, 방송 광고를 이용하여 재사용 화환을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방송 광고에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함께 하여 소비자, 유통업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 표시는 화환의 앞면, 인터넷 및 방송 광고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를 위하여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시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운영 및 경비의 지급
3. 법 제21조제1항, 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4. 제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다른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화훼관련 비영리법인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지정요건
1. 인력	화훼문화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추는 것 가. 10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원예 관련 학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3명 이상인 것 다. 화훼문화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추는 것
2. 시설 및 장비	화훼문화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모두 갖추는 것 가. 화훼 관련 교육, 체험 등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컴퓨터, 출력기기 등 정보 수집 및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장비 다. 음향, 영상기기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6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화훼문화진흥 업무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해당 전담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1조 제3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화훼문화진흥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1조 제3항제3호	경고	지정취소	
라.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법 제11조 제3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제2호 각 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1조제1항	500	800	1,000
나.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500	800	1,000
다.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가 제15조제1호를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500	800	1,000
라.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가 제15조제2호를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변경한 경우		500	800	1,000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제2항	250	400	500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250	400	500